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5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 거래제도 간 경쟁체제 정상 작동, 유통인의 권리와 의무 강화, 도매시장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매

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